

「나라키움 대학생주택」 입주서약서

국유재산 표시	(마포)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81-15 (층 호) 전용 11.60㎡ (강동)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66-4 (층 호) 전용 11.60㎡
------------	--

제1조(사용목적) 위 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.

제2조(거주기간) 위 재산의 거주기간은 2022년 (겨울학기)로 한다.

구분	1학기	여름학기	2학기	겨울학기
거주기간	매년 3~6월	매년 7~8월	매년 9~12월	매년 1~2월

- ※ 입·퇴실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·퇴실일은 사전에 통지한 날로 변경될 수 있음
- ※ 중도 입주자의 경우 거주기간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제3조(거주보증금) 신규 입주자의 거주보증금은 금삼십만원정(₩300,000-)으로 하며,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개시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.

제4조(임대료 및 관리비) 임대료 및 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금액을 적용하며, 거주기간 중 입주자는 입주(예정)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개시 경과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청구한다.

<임대료 및 관리비(2022년 기준)>

구분	1학기	여름학기	2학기	겨울학기
거주기간	2022년 3~6월	2022년 7~8월	2022년 9~12월	2023년 1~2월
마포·강동	1,360,000원	680,000원	1,360,000원	680,000원

- ※ 2023년 3월 이후 금액 변동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개별 고지되는 전기요금은 입주자가 별도 부담해야 함

<중도 입주자의 임대료 및 관리비>

구분	거주기간 1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2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3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4/4 경과 이내
총액대비	100%	75%	50%	25%

- ※ 입주 예정일이 속한 학기 임대료 및 관리비 총액에 위의 비율(%)을 적용하여 계산(백원 미만 절사)

제5조(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) ① 신규 입주예정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때 해당 학기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정된 은행계좌로 **선납**하여야 한다.

②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「입주서약서」를 제출하고 임대료·관리비를 지정된 은행계좌로 **선납**하여야 한다.

제6조(입주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가 제한된다.
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1. **법정 전염병 보균자(결핵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) 또는 정신질환자(우울증 등)**
2. 재학 상태가 아닌 자(단, 휴학생 및 취업준비생 자격자 제외)
3.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 등을 **허위 기재**한 자
4. 기한 내 거주보증금, 임대료 및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
5. 기타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(입주자 행위 제한)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목적의 변경
2. 재산의 원상 변경
3. 재산에의 시설물 설치
4. 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
5.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(轉貸)하는 행위

제8조(사고 및 분실 예방) ① 입주자는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.

②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우리 공사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.

제9조(협조의무) ① 입주자는 타 입주자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24시 이후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며 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을 반입하지 않는다.

② 관리자가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, 점검, 소독, 방역 등을 위하여 각 호실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용부담 및 재산의 보존) ① 입주자는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
②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, 소모성 비품의 교체·수선에 드는 비용,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·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.

③ 퇴실 시 재산이 훼손,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,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인계한다.

제11조(재산의 제3자 매각) 재산이 입주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 거주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제12조(거주기간의 연장)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다음 학기 「입주서약서」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거주기간 중 퇴실하려는 경우) ① 거주기간 중 입주자가 퇴실하고자 하는 경우 퇴실희망일 10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퇴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입주자가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퇴실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환불한다.

<중도 퇴실자의 임대료 및 관리비>

구 분	거주기간 1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2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3/4 경과 이내	거주기간 3/4 경과 후
총액대비	70%	50%	25%	환불없음

※ 퇴실일이 속한 학기 임대료 및 관리비 총액에 위의 비율(%)을 적용하여 계산(백원 미만 절사)

제14조(재산의 반환) ① 거주기간이 종료(거주기간 중 퇴실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 입주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또는 관리소장 참여 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거주기간의 종료일까지 입주자가 본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한다. 이 경우 거주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퇴거완료일까지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삼만원정(₩30,000-)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.

제15조(거주보증금 반환) ① 거주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가 중도 퇴실하는 경우 거주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반환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원상복구비용(소송비용 등 일체 제비용 포함), 손해배상금 등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를 제3채권자에 우선하여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.

본인은 「나라키움 대학생주택」(마포, 강동) (층 호)에 입주하며, 위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위 국유재산의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서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서약자 성 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 () - (1, 2, 3, 4 중 택1)

재 학 학 교 : ()대학(교 또는 원) ()학년, (20)학번

재 학 여 부 : (Y / N(휴학, 졸업))

본 인 연락처 :

보호자 주소 :

보호자 연락처 :